

[중재조항쟁점] 국내회사 독점수입총판업체 vs 외국회사 생산수출업체 사이 독점수입총

판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판계약서 중재조항의 적용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2028588 판결



## 사안의 개요

(1) 원고 한국회사 독점수입총판(대리상) vs 피고 말레이시아회사 생산수출업체

(2) 외국회사 계약종료 통지 2015. 9. 23. 계약종료

(3) 국내총판 독점대리상의 보상청구

(4) 국내총판업체 임원이 계약종료 전 2015. 4. 10. 퇴사, 퇴직 직전 2015. 4. 8. 경쟁업체

창업, 말레이시아 피고 생산수출업체가 원고 국내총판업체와 계약종료 후 신설업체와

국내총판계약 체결함

(5) 원고 국내총판업체에서 퇴직자 전직 임원 및 신설업체에 대해 업무상배임, 경업금지

위반, 영업비밀침해 책임 주장 + 피고 말레이시아 생산수출업체에 대해서도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피고회사 주장요지 - 총판계약서에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함. 소제기는

중재조항 위반으로 부적법함

**판결요지 - 중재조항 적용대상, 부적법한 소 제기, 소각하 판결**

**법리 - 중재조항이 적용범위**

(1) 관련 법리

중재법 제3조 제2호는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래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7434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76573 판결 등 참조).

이때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리상 보상청구의 경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대리상 보상청구는 원고의 주장자체로 보아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 및 효력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는 이 부분 청구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부분 - 계약분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 부정**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제1항이 정한 "당사자에 의해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떤 분쟁(any dispute which cannot be resolved amicably by the parties)"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는 이 부분 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이유

그런데 위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구성하는 대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국내 대리점 지위를 부여

하여 일정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2015. 4. 8.경 원고의 당시 임원인 D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회사 E를 설립하도록 협조 등을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상 경업금지 위반, 영업비밀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이론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이 사건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법원도 일찍이, 영업양도계약서의 중재조항에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분쟁"을 중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양도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으로서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본 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위의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 판결 참조).

⑤ 만일 계약상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중재조항의 대상범위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이 사건 중재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중재조항을 둔 의미가 반감된다. 아울러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기는 계약당사자가 분쟁의 실질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중재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청구를 변형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어 불합리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6. 선고 2017나2028588 판결

계약분쟁, 국제계약, 기업법무, 기술법무, 민형사소송, 손해배상, Claim, License 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